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개정전후대비표

<지침관리팀>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10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 '22.3.14.~22.5.13까지 한시 시행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 한시 시행 ('22.3.14.~별도 안내 시까지)	<진단총괄팀> RAT 확진인정 추가 연장 조치 '22.5.10 보도참고자료
	▶ '22.3.14~'22.5.13까지 한시 시행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 한시 시행 ('22.3.14.~별도 안내 시까지)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진단총괄팀> RAT 확진인정 추가 연장 조치 '22.5.10 보도참고자료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11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1. 확진환자 신고·보고** ○ **(의료기관)**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24시간 이내 보고**(유선, 기타 핫라인 등 방법)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란에 "전문가용 RAT 양성" 또는 "응급선별검사 양성" 입력 권고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 ○ **(보건소)**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는 시·도로 24시간 이내 보고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검사수탁기관으로부터 확진(양성)결과 확인 - **(이전보고 받은 건)** 검사관할보건소에서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로 이전보고된 발생보고건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매일 확인하여 처리 * 환자감시 → 감염병웹보고 → 보고내역 관리 → '구분' 이전보고 받은건 → 조회 → 환자 클릭 → '이전보고건 보고' - **(병의원 신고 건)** 관내 병의원(의료기관) 양성 신고건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매일 확인하여 처리 * 환자감시 → 감염병웹보고 → 보고내역 관리 → '구분' 병의원 신고건 → 조회 → 환자 클릭 → '수정 보고' ▶주의: 실거주지로 이관하는 확진자의 경우 이미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신고하였으므로, 중복으로 신고하지 말 것 ▶ 검사결과 양성 건은 반드시 당일 입력해야 하며, 당일 보고 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에서 확진환자번호 부여 관련서식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1. 확진환자 신고·보고** ○ **(의료기관)**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24시간 이내 신고**(유선, 기타 핫라인 등 방법)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란에 "전문가용 RAT 양성" 또는 "응급선별검사 양성" 입력 권고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3항, 제4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3항 ◆ 주의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에 신고 ○ **(보건소)**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는 시·도로 24시간 이내 보고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3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검사수탁기관으로부터 확진(양성)결과 확인 - **(이전보고 받은 건)** 검사관할보건소에서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로 이전보고된 발생보고건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매일 확인하여 처리 ▶ 환자감시 → 감염병웹보고 → 보고내역 관리 → '구분' 이전보고 받은건 → 조회 → 환자 클릭 → '이전보고건 보고' - **(병의원 신고 건)** 관내 병의원(의료기관) 양성 신고건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매일 확인하여 처리 ▶ 환자감시 → 감염병웹보고 → 보고내역 관리 → '구분' 병의원 신고건 → 조회 → 환자 클릭 → '수정 보고' ◆ 주의: 실거주지로 이관하는 확진자의 경우 이미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신고하였으므로, 중복으로 신고하지 말 것 ◆ 검사결과 양성 건은 반드시 당일 입력해야 하며, 당일 보고 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에서 확진환자번호 부여 관련서식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종합상황실〉 확진환자 신고·보고 법적 근거 명확화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13	**2. 확진환자 사망 신고·보고**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사망자 집계 절차 >** ○ **(의료기관/보건소)** 확진환자가 사망한 경우 최초 인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련서식 [서식 2]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사망보고를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입력 **[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 **(사망신고 보건소)** 사망사례 최초 인지 의료기관 등(재택치료 시 사망 포함)을 통해 사망신고를 최초로 받은 **보건소**는 **사망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관련자료▸ 제출**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3조, 제18조의4, 제76조의2(2021.3.9.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1호의4서식(2020.12.30. 시행)	**2. 확진환자 사망 신고·보고**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사망자 집계 절차 〉** ○ **(의료기관)** 확진환자가 사망한 경우 최초로 인지한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사망(검안)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1호제3호, 제3항, 제4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제3항 관련서식 [서식 2]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 **(보건소)** 확진환자가 사망한 경우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는 사도로 24시간 이내 보고하고,** 사망(검안)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3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사망보고를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입력 **[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 사망사례 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제출▸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3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별지 제1호의4서식(2022.5.4. 일부개정)] **[제출 내용]** ▶ **확진 후** 격리 치료기관 중 관할지역이 아닌 타지역 의료기관 입원자료 포함 ▶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등** - **의무기록**은 격리치료 기간 중 주치의 작성 경과기록지, 흉부 X-ray 또는 CT 영상판독기록지, 입원초기 작성한 (기초)간호정보조사지 및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한 자는 응급실 기록지 등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 후 확진 등 **특이사례의 경우 확진 전·후 의무기록 또는 사망진단서 등 관련자료 일체**	〈정보분석팀〉 확진환자 신고·보고 법적 근거 명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2. 5. 4.〉 반영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제출 방법]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 **이메일**(kdca21@korea.kr)을 이용하여 **사망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우편제출** 시 **사전연락**(043) 719-7747, 7746, 7744) **필수** - 제출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내 질병관리청 14동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 ○ **(발생신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확진자 발생신고 기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사망 사례조사 실시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15	1. 개요 ○ **(관리)** 증상별(유증상·무증상), 국적별(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체류기간별(장·단기), 격리 면제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해외입국자(승무원 제외) 전수 진단검사 실시	2. 개요 ○ **(관리)** 증상별(유증상·무증상), 국적별(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체류기간별(장·단기), ~~격리 면제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해외입국자(승무원 제외) 전수 진단검사 실시	〈해외출입국관리팀〉 수정
15			〈해외출입국관리팀〉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2. 일반적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7일간 격리조치(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구분: 유증상자 ⇨ 진단검사: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 검사결과: 양성 ⇨ 조치사항: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 ⇨ 조치사항: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검역단계 무증상자 구 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보건소 (항만)검역소 ▶ ⇨ 격리: 7일간 자가격리 ⇨ 추가 검사: 6-7일차 RAT실시 구 분: 단기체류외국인 ⇨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임시생활시설 (항만)검역소 ▶ ⇨ 격리: 7일간 시설격리 (7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추가 검사: 6-7일차 PCR검사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항만입국자 PCR검사 방법 : 입국 후 1일차 검사는 검역소에서 실시, 추가검사는 관할 보건소(또는 시설)에서 실시함	**2. 일반적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구분: 유증상자 ⇨ 진단검사: 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 ⇨ 검사결과: 양성 ⇨ 조치사항: 병원, 재택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 ⇨ 조치사항: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검역단계 무증상자 구 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입국 전 음성확인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제출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보건소 ⇨ 격리: 확진자만 격리 ⇨ 추가 검사: 6-7일차 RAT 권고 구 분: 단기체류외국인 ⇨ 입국 전 음성확인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제출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격리: 확진자만 격리 ⇨ 추가 검사: 6-7일차 RAT 권고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유증상자 양성 재택 이동중 임시생활시설 해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추가 검사 RAT 권고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항만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보건소로 이동 항만입국자 중 단기체류외국인 임시생활시설 미운영 6-7일차 PCR 실시에서 RAT 권고로 전환
16	**나. 기관별 역할** **1) 검역소** ○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격리통지서 발급 및 검사 대상자에 대한 검체 채취 등 수행 ▶ 출입국심사대에서 격리통지서 발급(법무부 행정지원) ▶ 채취된 검체 검사는 권역센터(진단분석과 실험실) 소관 실험실에서 수행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나. 기관별 역할** **1) 검역소** ○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격리통지서 발급~~ 및 ~~검사 대상자~~ 유증상자 등에 대한 검체 채취 등 수행 ~~▶ 출입국심사대에서 격리통지서 발급(법무부 행정지원)~~ ▶ 채취된 검체 검사는 권역센터(진단분석과 실험실) 소관 실험실에서 수행 ▶ 공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된 QR코드로 제출서류 확인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해외출입국관리팀〉 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 2. 법무부 행정지원 종료 3. 관련 서식 삭제
16	2) 보건소 ○ **(자가격리 대상자)** 자가격리 장소에서 입국일로부터 7	2) 보건소 ~~○ **(자가격리 대상자)** 자가격리 장소에서 입국일로부터 7~~	〈해외출입국관리팀〉 1. 입국자별 검사 장소 안내를 위한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일간 자가격리 <신설>	~~일간 자가격리~~ ○ 선별진료소에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구분하여 PCR 검사 대상자 확인 ▶ 여권을 확인하여 내국인·외국인을 구분하고, 입국심사확인증(출입국 발급),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외국인 여부 확인 ▶ 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을 바탕으로 해외입국자 여부 확인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입국 후 검사 결과 모니터링 - **(자택대기)** 자가 및 숙소에서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대기 권고 - **(수동감시)** 입국 후 10일간 수동 감시실시 및 수동감시자 권고 수칙 안내 **<수동감시자 권고 수칙>**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 수동 감시 기간 중,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 자제하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 **(결과등록)** 검사결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에 등록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참고자료 [부록 38]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 입국 후 10일간 수동 감시 실시 - 코로나19 의심 증상 신고 시 수동감시자 권고 수칙 안내	문구 추가 2.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의무 해제 (수동감시 실시)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입국자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에 관리대상 명단 통보 방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 → (신) 해외입국자 관리를 이용하여 확인 ▶ 격리통지서는 입국 시 발부한(질병관리청장 명의) 통지로 갈음(지자체 차원의 별도 격리통지서 발급 불요)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 **입국자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에 관리대상 명단 통보 방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 → (신) 해외입국자 관리를 이용하여 확인 ~~▶ 격리통지서는 입국 시 발부한(질병관리청장 명의) 통지로 갈음(지자체 차원의 별도 격리통지서 발급 불요)~~ ▶ 입국 후 1일차 검사 결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에 등록 안내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16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가 이동조치 시행 ○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2) 격리 조치** ○ **(지자체)**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전체 삭제>	〈해외출입국관리팀〉 -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의무 해제

<table>
<tr><th>쪽</th><th>현행(13판)</th><th>13-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td><td>
▶ 자가격리 관련 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적용
○ (격리시설 관리주체) 단기체류외국인 대상 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및 시설격리
▶ 상세사항은 「입국자 임시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지침」 참조
▶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격리시설 등 구분
<table>
<tr><th>구 분</th><th>입국장소</th><th colspan="2">대상자</th><th>진단검사</th><th>격리시설</th><th>설치 앱</th></tr>
<tr><td>유증상자</td><td>공·항만</td><td colspan="2">입국자 전수</td><td>권역센터</td><td>음성일 경우, 무증상자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td><td>-</td></tr>
<tr><td rowspan="6">무증상자</td><td rowspan="4">공항</td><td colspan="2">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td><td>보건소</td><td>자가</td><td></td></tr>
<tr><td rowspan="3">단기체류외국인</td><td>인천공항</td><td>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td><td>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td><td rowspan="4">(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앱</td></tr>
<tr><td>그 외 공항</td><td>지자체 지정 격리시설</td><td>지자체 지정 격리시설</td></tr>
<tr><td colspan="2">격리면제자</td><td>방대본 운영 임시검사시설</td><td>-</td></tr>
<tr><td rowspan="3">항만</td><td colspan="2">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td><td>권역센터</td><td>자가</td><td></td></tr>
<tr><td colspan="2">단기체류외국인</td><td>권역센터</td><td>해수부 운영 격리시설</td><td rowspan="2">(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앱</td></tr>
<tr><td colspan="2">격리면제자</td><td>권역센터</td><td>-</td></tr>
</table>
</td><td></td><td></td></tr>
<tr><td>17</td><td>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td><td><전체 삭제></td><td>〈해외출입국관리팀〉
- 예방접종완료자 별도관리 중단</td></tr>
<tr><td>19</td><td>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td><td><전체 삭제></td><td>〈해외출입국관리팀〉
-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 해제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2.26.)</td></tr>
<tr><td>22</td><td>5.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
▶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참조
▶ 「검역 단계 (내·외국인) 확진자 치료병상 배정 절차」(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20.7.6.) 참조
가. 병상배정 요청</td><td>5.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
~~▶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참조~~
~~▶ 「검역 단계 (내·외국인) 확진자 치료병상 배정 절차」(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20.7.6.) 참조~~
가. 병상배정 요청</td><td>〈해외출입국관리팀〉
1.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의무 해제 및 확진자만 격리로 전환
2. 임시생활시설 운영 종료</td></tr>
</table>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1)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 경우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병상배정 요청 ○ **(기타 검역소)** 검역소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환자 병상배정 후 이송, 검역소 소재 시·도에 중환자 병상 부족 시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 지원 요청 ▶ **기존 절차대로 운영하되, 환자상태가 응급·중증이라 국립중앙의료원 배정 및 이송대기가 어려운 응급환자일 경우 아래 절차 준수**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환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인천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 ○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환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설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 ○ **(인천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 등)** 이송한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 실시,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전원이 가능해진 경우 환자 거주지 시·도 환자관리반에 병상배정 요청▶ ○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 인천지역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한 병상배정 및 전원지원▶ ▶ **(공통) 서울, 인천, 경기지역 환자일 경우: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담당**	1)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 경우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병상배정 요청 ○ **(기타 검역소)** 검역소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환자 병상배정 후 이송, 검역소 소재 시·도에 중환자 병상 부족 시 ▶ **기존 절차대로 운영하되, 환자상태가 응급·중증이라 국립중앙의료원 배정 및 이송대기가 어려운 응급환자일 경우 아래 절차 준수**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환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인천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 ~~○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환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설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 ○ **(인천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 등)** 이송한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실시,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전원이 가능해진 경우 환자 거주지 시·도 환자관리반에 병상배정 요청▶ ○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 인천지역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한 병상배정 및 전원지원▶ ▶ **(공통) 서울, 인천, 경기지역 환자일 경우: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긴급대응반 담당**	
	2) 경증 확진자의 경우(공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병상배정 필요시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은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장거리 이동이 요구되는 등 거주지 소재 병상 배정이 어려운 경우(예. 국립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제주도민),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또는 검역소 소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2)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공항) ○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자가용 또는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재택 치료 원칙 ▶ (인천공항) 단기 체류 외국인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이송(영종도 소재 ORA 호텔)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임시생활시설은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요청~~ ~~㉡ **(외국인)**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요청~~ 3) 경증 확진자의 경우(항만,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병상배정 필요시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거주지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외국인)**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지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3)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항만) ○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병상배정 필요시 검역소는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 배정하도록 요청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나. 병상배정 통보 ○ **(시 ·도 연락담당관)** 시·도 환자관리반을 통해 중증도에 따른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후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또는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에 결과 통보 다. 환자 및 접촉자 명단 통보 ○ **(검역소)**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또는 공문)을 통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확진자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확진자 ~~및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감염병 발생신고·보고(~~입원·격리 통지서 발급 포함~~) ▶ 접촉자의 경우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 그 외 병상 배정 및 재택치료 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적용	나. 병상배정 통보 ○ **(시 ·도 연락담당관)** 시·도 환자관리반을 통해 중증도에 따른 병상 배정 후 검역소에 결과 통보 다. 환자 및 접촉자 명단 통보 ○ **(검역소)**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또는 공문)을 통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확진자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확진자 등록하고 감염병 발생신고·보고 ▶ 접촉자의 경우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 그 외 병상 배정 및 재택치료 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적용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24	**6. 진단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 실시 ▶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하선자는 전수 권역센터에서 PCR검사 실시 ▶ **하선자 용어정의** ① (입국자) 하선자 중 선원교대 등의 사유로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는 내 외국인 *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재승선 하는 사람은 입국자로 보지 않음 ② (상륙허가자) 하선자 중 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③ (재승선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했다가 선박으로 다시 들어가는 내국인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 ○ 지자체에서 필요시 해외입국자에 대한 추가검사 시행가능 - 관할 지역 내 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사례가 5명 이상일 경우 취합검사법 적용 권고 - 단, 추가 검사는 각 지자체 재원(지방비) 활용 **7. 격리해제** ▶ 격리해제 관련 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 마.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 적용	**4. 진단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항만 상륙자에 대해서는 하선 시, 검역소에서 실시한 PCR 검사를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로 대체 가능 ▶ 모든 입국자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 (https://cov19ent.kdca.go.kr)에 등록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지자체에서 필요시 해외입국자에 대한 추가검사 시행가능 - 관할 지역 내 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사례가 5명 이상일 경우 취합검사법 적용 권고 - 단, 추가 검사는 각 지자체 재원(지방비) 활용 **5. 격리해제** ▶ 격리해제 관련 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3의2.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 바.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 적용	〈해외출입국관리팀〉 1. 입국후 1일차 PCR 검사로 전환 2. 기간 도과로 항만 입국자 정책 변화
V. 확진환자 대응방안			
26	○ 초기 분류는 확진자 조사서와 선별 질문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 환자관리반이 아래의 입원 고려 위험요인을 참고하여 분류 - 시·도 환자관리반은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높은 확진자는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배정 절차를 진행함	○ 초기 분류는 확진자 조사서와 선별 질문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 환자관리반이 아래의 입원 고려 위험요인을 참고하여 분류 - 이하 삭제	〈중수본 수도권긴급대응반〉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으로 주거취약자 여부, 재택치료 어려움등은 배정 시 고려되지 않음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초기 분류 시 재택치료 어려운 환자 조건 ① 입원/입소 요인(위험 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②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③ 소아/장애/70세이상 등의 경우로서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④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입원 고려 위험요인에 해당하더라도 재택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필요시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를 받도록 함 참고자료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		
27	○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배정이 어려울 경우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에 의뢰하여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병상 배정을 추진 ▶ 코로나19 중앙/권역공동대응상황실 및 시·도 환자관리반의 배정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이에 따라 입소한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방침임을 기 안내 (2020.8.24. / 2020.12.22. / 2021.12.13.)	(박스 안 내용 추가) ▶ 코로나19 중앙/권역공동대응상황실 및 (이하생략) ▶ 병상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권역별 공동대응을 통한 병상배정 안내 (2022.6.22.)	〈중수본 수도권긴급대응반〉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의 근거를 기 시행 공문을 통해 확보한 바 있어 이를 추가함
27	(신설)	○ 응급상황 등 긴급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배정 절차없이, 확진자를 자체수용 가능 (2022.2.21./2022.3.14.) - 수용경로는 다음▸으로 제한하며 자체수용 결과를 보건소에 사후보고해야 함 ▶ 응급실 경유 환자 ▶ 거점전담병원(분만특화, 소화특화 거점전담병원 포함)에서 대면진료한 특수환자(투석, 소아, 임산부, 요양시설 입소자)	〈중수본 수도권긴급대응반〉 자체수용 관련 기 시행 공문 내용 및 적용 사례 추가
31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전체 삭제	〈중수본 수도권긴급대응반〉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으로 퇴원 후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하는 사례 없음
41	❶ 기본적으로 '대면진료 의료기관'(응급실, 전담병원, 외래진료센터)에 적용 ❷ 응급실 경유한 자체수용의 경우는 선배정 후보고 가능 ▶ 기본 절차로 준용하되,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정 적용 가능	❶ 기본적으로 '대면진료 의료기관'(응급실, 전담병원,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대면진료 수행기관))에 적용 ❷ 응급실 경유한 자체수용의 경우는 선배정 후보고 가능 ▶ 기본 절차로 준용하되,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정 적용 가능	〈중수본 의료대응전략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병의원의 명칭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22.7.1.~)
42	3.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나. 기본원칙	3. ---------- 나. ------	〈역학조사팀〉

<table>
<tr><th>쪽</th><th>현행(13판)</th><th>13-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td><td>○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사 방식 효율화
- (방식) 확진자 진술 기반 조사, 자기기입식 조사
- (내용) 인적정보,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증상 및 기저질환, 동거인 정보

▶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td><td>○ ----------
- (---) ----------
- (---) ----------▶ ----------

▶ ----------
① ----------
② 정신건강증진시설[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③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쉼터(아동 포함)]

○ 신종변이바이러스 대응 관련 사항은 매뉴얼 참고
참고자료 [부록 40] 코로나19 관련 신종변이바이러스 감시·조사 평가 매뉴얼</td><td>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장애인정책과 의견 확인 후 감염취약시설 상세화
신종변이바이러스 대응 관련 부록 안내</td></tr>
<tr><td>42</td><td>다. 용어정의
<table><tr><th>용어</th><th>정의</th></tr><tr><td>조사대상 접촉자</td><td>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td></tr><tr><td>격리대상 접촉자</td><td>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td></tr><tr><td>감염취약시설 3종</td><td>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td></tr><tr><td>수동감시</td><td>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td></tr><tr><td>격리</td><td>관할 보건소가 감염 및 전파위험이 높은 접촉자를 일정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 분리·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 지원하는 관리 방식</td></tr><tr><td>자율관리</td><td>보건당국 안내 사항을 자발적 준수하거나 소속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르는 관리 방식</td></tr></table></td><td>다. ------
<table><tr><th>용어</th><th>정의</th></tr><tr><td>조사대상 접촉자</td><td>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td></tr><tr><td>격리대상 접촉자</td><td>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td></tr><tr><td>수동감시</td><td>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td></tr><tr><td>격리</td><td>관할 보건소가 감염 및 전파위험이 높은 접촉자를 일정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 분리·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 지원하는 관리 방식</td></tr><tr><td>자율관리</td><td>보건당국 안내 사항을 자발적 준수하거나 소속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르는 관리 방식</td></tr></table></td><td>〈역학조사팀〉
기본원칙 내 시설 구분 중복으로 삭제</td></tr>
<tr><td>45</td><td>3의2. 자가격리자 운영방안</td><td>3의2. 자가격리자 운영방안</td><td>(격리관리팀) 법적 근거 추가, 해외입국자</td></tr>
</table>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2조제2항·제7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2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사람 외에도 신고나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자가격리자가 아닌 해외입국자 시설격리는 **「입국자 임시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 지침」** 참조 가. 자가격리 대상자 ○ 확진자(재택치료 환자에 한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감염병의심자**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①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정신건강시설, ③장애인시설]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 ----------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2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 제14호, 제79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2 ◆ ---------- (삭제) 가. ---------- ○ ----(----------)로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삭제) ① (삭제)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로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증진시설[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③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쉼터(아동 포함)]	격리 중단 조치 반영, 표현 명확화 〈역학조사팀〉 기본원칙 내 시설 구분 명확화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나. 격리통지 방법 ○ 격리통지는 입원·격리통지서(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나, 신속한 통지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2조 예외규정에 근거해 문자, SNS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사진, PDF 형태의 법정통지서는 첨부 생략 가능 - 단,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문서 형태의 법정 입원·격리통지서 발급 ▶ '22.4.11. 이후 자가격리 확진자의 입원·격리통지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가능 - 문자 등 방법으로 통지 시 통지의 효력을 위해 격리대상자 성명, 격리기간, 격리장소, 검사의무, 통지기관, 담당자연락처 등 필수 기재 - 격리통지 시 격리수칙 등 안내문을 함께 전송 ○ 지자체 여건이 허락할 경우, 문자 격리통지 외 법정 입원·격리통지서 발급(사후발급 포함) 권고	○ 자가격리 대상자를 돌보기 위해 공동격리를 신청하고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나. ----------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 "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중략)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한다." ▶ ----------입원·격리통지서는--------- - ---자가격리자가 ------- 경우 법정 서식의 입원격리통지서-- ▶ '22.4.11. 이후 통지된 자가격리자의 입원·격리통지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 --- 등의 ---------- - ------ 격리수칙,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의 안내문 또는 안내문 확인 URL 링크를 반드시 함께 제공 ○ ---------- 법정 서식의 입원·격리통지서 발급(사후발급 포함) ---	(격리관리팀) 법적 근거 추가, 해외입국자 격리 중단 조치 반영, 표현 명확화
46	▶ (예) 코로나 행정지원센터를 통한 일괄 사후발급, 정부24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 등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공항 검역소에서 담당	▶ (삭제) ○ (삭제)	(격리관리팀) 법적 근거 추가, 해외입국자 격리 중단 조치 반영, 표현 명확화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 (1단계)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음·양성확인 통보 (2단계) 보건소의 격리통지(확진자조사서 링크 포함)	▶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격리통보 문자 예시] (지자체에 따라 일부 변경 사용 가능) 1. 귀하는「감염병예방법」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격리대상자 : ○○○ - 격리기간 : '22. ○.○. ~ ○. 24:00(음성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격리장소 : 자가 - PCR 검사 : 2회(접촉자 분류 즉시 1회, 6~7일차 1회) 2. 격리수칙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첨부한 안내문의 격리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 통지기관: ○○시 보건소장 (담당자 ○○○-○○○-○○○○) 5. '자가격리자생활수칙 안내문' 등 첨부 또는 링크	[격리통지 문자 예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자 통지 이외의 상황에서 지자체에 따라 일부 변경 사용 가능) 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positive(+))으로 확진되어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45일 이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https://covid19m.kdca.go.kr/selfreport/33700125/159792275 (※ 제출 후 수정 불가) - 격리대상자: 000 - 격리기간: 2022-06-20 ~ 2022-06-26 24:00 (단,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된 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이 되는 날임) - 격리장소: 자가(입원환자는 병원, 시설입소환자는 생활치료센터) 2. 통지기관: 000 000보건소 보건소장 (담당자 000-000-0000) *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격리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대상자의 격리기간 내에 관할보건소에 신청) 4. 확진자와 동거인 안내문은 아래 URL에서 확인해 주세요. ※ (동거인 권고사항) 3일 이내 PCR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PCR검사 후 자택 대기 권고, 음성이더라도 10일 간 가급적 외출 자제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 소아 재택치료 증상별 대응요령 https://c11.kr/xl4y 5. 격리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 진료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6. 정부24(홈페이지 및 앱)에서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유급휴가비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격리해제 후 90일 이내 신청 필요)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다. 자가격리 방법	다. ----------	
	○ **(격리 방법)**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	○ **(격리장소)** 격리장소는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현재 거주지에서 격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해외입국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 또는 지자체 운영 예비시설 등 입소 ○ **(격리방법)**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 자가격리자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사용 전후 반드시 소독해야 함 ○ **(이탈방지)** 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관할 보건소의 허가없이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삭제)	
	▶ 격리수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생활지원비 등 미지원	▶ ---- 위반 시 ----------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	- (삭제)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 ---------- 외출이 ---------- ---------- 마스크를 -- 착용하고, 감염 위험도 ---- ----------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 참석은 자제할 것을 권고	
	○ **(공동격리)**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로 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 **(----)** 자가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이 공동격리할 -----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 그 외에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공동격리 가능	▶ ------자가격리자가 ----------	
47	**[공동격리 관련 주의사항]** ①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2인까지 인정 ② 공동격리자는 돌봄 대상 원격리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격리하며 격리수칙을 준수해야 함 ▶ 공동격리자가 격리수칙 위반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③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해서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은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원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함 - 출입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 달성 후 귀가 ▶ 적정 거리두기(방문 중 별도공간 대기 등), 마스크 착용(KF94 이상), 집안 환기·소독 등 라. 일시 외출 ○ **(허용 외출)** 해외입국자, 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에 한하여 필수적 목적▶의 경우 자가검진키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외출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온라인 구매 등 우선 활용	[----------] ① 공동격리자는 ---------- ② -------- 돌봄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와 격리장소 내 독립된 공간에서 ---------- ▶ ---------- ③ ------ 돌봄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 ---------- ▶ (삭제) - 방문자는 방역수칙을 ---------- ▶ ------(--- 중 별도의 공간 대기 --)---------- 라. 일시 외출 ○ **(허용 외출)** 확진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관련 병·의원 방문 및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외출이 허용됨(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임종의 경우 24시간 이내 복귀)	(격리관리팀) 법적 근거 추가, 해외입국자 격리 중단 조치 반영, 표현 명확화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최초 외출에 한함) 등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임종의 경우 24시간 이내 복귀 ▶ **(임종)**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임종에 한함	▶ (삭제) ▶ (임종)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의 임종에 한하며, 의료기관 등 임종 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외출이 허용됨	
	◆ 확진자의 경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의료기관 등 임종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외출 허용	◆ (삭제) -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공동격리자 등(이하 비확진 자가격리자)은 필수적 목적에 한하여 자가진단키트 검사 음성 확인 후 외출이 허용되나(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임종의 경우 24시간 이내 복귀), 비대면 진료, 온라인 구매 등의 우선 활용을 권고 ▶ (필수적 목적)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및 진단키트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임종 등	
	○ **(일반 진료)** 「재택환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외래 대면 진료체계」적용	○ **(코로나19 이외 일반 진료)** ----------	
48	마.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 ○ **(대상)** 해외입국자, 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	마. 장례참석에 ---------- ○ 비확진 자가격리자가 지자체에 격리해제를 신청하면(신청서 작성), 장례기간 내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격리해제를 허가함(해제서 발부)	(격리관리팀) 법적 근거 추가, 해외입국자 격리 중단 조치 반영, 표현 명확화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자가격리중인 사람이 해당 보건소에 격리해제를 신청하면(신청서 작성), 장례기간 중 일시적으로 자가격리 해제를 허가함(해제서 발부) 관련서식 [서식 21]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신청서/[서식 22]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서 ▶ 장례식 참석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격리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장례식▶(발인, 삼우제 등 포함)참석 가능 ▶ 본인의 배우자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적용제외)** 확진되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 제도 미적용	▶ (삭제) 관련서식 [서식 21]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신청서/[서식 22]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서 ▶ 장례식 참석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격리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장례식▶(발인, 삼우제 등 포함)참석 가능 ▶ 본인의 배우자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존속의 재혼 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의 장례(발인, 삼우제 등 포함) ▶ (삭제) - 확진 자가격리자는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미적용	
	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도 출국 ○ 자가격리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격리기간 중이라도 중도 출국을 제한적으로 허용	**바. (삭제)** ○ (삭제)	

<table>
<tr><th>쪽</th><th>현행(13판)</th><th>13-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td><td>
○ **(대상)**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되어** 별도의 격리명령이 통지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사유)** 해당 지자체장이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으로 승인한 경우
○ **(요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자만 출국 가능, 공항 이동 시 자차, 방역차량 등 이용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 ① 중도출국 사유 근거자료, ② 항공권, ③ 공항 이동수단

○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라 중도출국자 명단 통보 폐지

사.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
○ **(격리기간)**

① 확진자의 경우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 자동기재

▶ 보건소 검사 건은 '의뢰확정일(확진일)', 의료기관 검사 건은(RAT) '진단일'을 격리시작일로 하여, 검체채취일(의료기관 RAT검사의 경우 진단일) 포함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함
<table>
<tr><th>구분</th><th>격리시작일</th><th>격리종료일</th></tr>
<tr><td>보건소 검사 건</td><td>의뢰확정일(확진일, 양성결과확인일)</td><td>검체채취일 + 6일</td></tr>
<tr><td>의료기관 RAT검사▶ 건</td><td>진단일(확진일, 검체채취일)</td><td>진단일 + 6일</td></tr>
</table>
▶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되는 경우는 이와 다를 수 있음

② 감염취약시설 3종 접촉자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날을 포함
</td><td>
(삭제)

○ 삭제

바. 자가격리 기간 및 검사
○ **(확진자)**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 자동기재

① (삭제)

▶ 보건소 검사 건은 '의뢰확정일(확진일)', 의료기관 검사 건은(RAT) '진단일'을 격리시작일로 하여, 검체채취일(의료기관 RAT검사의 경우 진단일) 포함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함
<table>
<tr><th>구분</th><th>격리시작일</th><th>격리종료일</th></tr>
<tr><td>보건소 검사 건</td><td>의뢰확정일(확진일, 양성결과확인일)</td><td>검체채취일 + 6일</td></tr>
<tr><td>의료기관 RAT검사▶ 건</td><td>진단일(확진일, 검체채취일)</td><td>진단일 + 6일</td></tr>
</table>
▶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되는 경우는 이와 다를 수 있음

② (삭제)
</td><td></td></tr>
</table>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함 ③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한 날을 포함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함 ▶ 기타 사유로 자가격리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입원·격리통지서에 명시한 기간을 격리기간으로 봄 ▶ 격리시설에서 격리한 경우 퇴소절차 등을 고려 실제 해제 시간 조정운영 가능 ○ **(격리자 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해외입국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2회 검사를 받아야 함(공동격리자 및 감염취약시설 접촉자는 검사권고, 해외입국자는 검사의무) - (1차 검사) 공동격리자는 가구내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감염취약시설 접촉자는 접촉자 분류시부터, 해외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 - (2차 검사) 격리 6~7일차 되는 날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PCR검사(감염취약시설 접촉자의 경우) ○ **(격리해제)** 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해외입국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는 2차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도 격리해제 적용)	③ (삭제) ○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날을 포함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 (24:00)까지 ○ **(공동격리자)**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의 격리종료시까지 ▶ 기타 사유로 격리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입원·격리통지서에 명시한 기간을 격리기간으로 봄 ▶ (삭제) ○ **(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비확진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2회 검사 - 감염취약시설 접촉자(의무)는 접촉자 분류시 PCR검사, 격리 6~7일차 되는 날 PCR검사 - 공동격리자(권고)는 가구 내 확진 자가격리자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 격리 6~7일차 되는 날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 PCR검사 권장) ○ (삭제)	
50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역학조사팀〉 - 코로나19 지자체 대응 지침의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50	○ **(재감염 추정)**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감염 추정)**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및 감염병 의심자 정의」의 진단검사 기준에 따름
50	▶ 보고시점 : 발생 24시간 이내 - 해외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입국 후 국내 PCR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될 시	▶ 보고시점 : 발생 24시간 이내 - 해외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입국 후 국내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에서 양성이 확인될 시	
51	○ **(사례판정)** 사례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 재감염 추정사례 판정 ▶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 중 국내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된 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코로나19 검사결과지 또는 의무기록)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증명서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 중 국내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에서 양성 판정된 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코로나19 검사결과지 또는 의무기록)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증명서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54 - 55	5.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삭제	〈환자관리팀〉 오미크론 이후 신규 및 신종변이 바이러스 대응 방역 체계 변경을 반영한 **'변이 대비 · 대응 역량 강화을 위한 표준 매뉴얼[부록 40] '마련 및** 대응지침 상의 변이대응 환자관련 본문의 출처인 기존 **'변이대응 실무매뉴얼' 폐지로 인하여** 대응 지침상 ' 변이관련 환자 관리 내용 별도 수록은 불필요 함'
54	6.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 「2022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안내」 "Ⅶ.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의 감염병환자 입원치료 참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참조	6.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 「2022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안내」 "Ⅶ.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의 감염병환자 입원치료 참고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참조	〈지침관리팀〉 관련 지침명칭 현행화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Ⅵ. 실험실 검사 관리		
61	4. 검사기관 ◆ 기관에서 실시한 확진 검사에서 최초 양성을 확인한 경우, 질병관리청과 2중 확인 필요 (최초 양성 1회에 한하며, 이후에는 검사기관 자체 양성 판정 가능)	4. ---- ◆ 삭제	검사기관 최초 양성 확인 시험 중단
61	○ **(신속항원검사)**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 등 일반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적용(건강보험 지원) 대상]** ①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환자 ② 중환자실 입원환자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의 혈액투석 환자 ④ (한시적 적용)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내원 환자 중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 - 의사의 진단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	○ **(신속항원검사)**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일반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적용(건강보험 지원) 대상]** ①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환자 ② 중환자실 입원환자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의 혈액투석 환자 ④ (한시적 적용)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 - 의사의 진단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 - 의사의 판단에 따른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중수본 의료대응전략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병의원의 명칭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22.7.1.~) 〈복지부, 보험급여과〉 -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로 확대('22.4.4.) - 의사의 판단에 따른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지원 안내(보험급여과-3877호, '22.7.29.)
63	5. 검사 기관별 결과 보고 **가.~라.** **(신설)**	5. 검사 결과 보고 및 관리 **가.~라.** **마. 검사 오류 의심 시 조치** ○ **(검사 오류)** 검체 채취·취급·검사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하여 검사 결과가 잘못 판정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진단총괄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인권침해조사과-1782, 5.12.) 사항 반영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 타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 요청하는 재검사는 해당하지 않음 ▶ (검사 오류 의심 사례의 예시) - 동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채취한 서로 다른 다수의 검체가 모두 양성으로 판정되는 사례 - 동일한 검체에 대한 반복 검사 결과가 상이한 사례 - 의료진 소견에 따라, 임상증상이 코로나19 감염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사례 ○ **(기관별 역할)** - **(지자체)** 검체 채취 단계를 포함한 검사 전 과정에 대한 1차 조사▶(오염 및 검체 뒤바뀜 가능성, 역학적 연관성 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1차 조사의 예시) - 검체 채취 상황 점검(장갑 교체, 청소, 소독, 검체 정보 기록, 검사 도구 취급 등 오염·뒤바뀜 발생 가능성 검토) - 의심 검체의 앞, 뒤 순서에 채취 또는 검사한 검체의 검사 결과 확인 - 검사기관의 반복 검사 시행 여부 및 검사 결과 확인(필요시, 잔여 검체 활용한 재검사 시행) - **(질병관리청)** 심층 조사, 검사기관 점검·관리 등 ○ **(절차 및 방법)** ① 지자체의 1차 조사 결과 검사 오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조사 종료 ▶ 피검자가 검토를 요청한 경우, 피검자에게 조사 결과 통보 ② 검사 오류가 확인된 경우 - 지자체의 1차 조사 결과 검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보건소는 피검자에게 해당 사실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통보 및 필요한 후속 조치 시행(환자 신고 정정 요청, 재발 방지 조치 시행 등) ③ 검사 오류가 의심되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 **(지자체)** 1차 조사 결과, 검토 의견 등 포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진단총괄팀)에 검토 요청(공문 송부) - **(질병관리청)** 지자체의 1차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하여 검사 오류 가능성 검토 → 지자체에 검토 결과 통보	
		Ⅷ. 자원관리	
70-71	4. 환자의 전원 및 시설 입소	전체 삭제	〈중수본 수도권긴급대응반〉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으로 퇴원 후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하는 사례 없음
		서식	
76	〈서식 5〉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서식 5〉 ----------	〈역학조사팀〉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제공 가능 여부, 역학조사 거부·방해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 문구 명확화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서식 5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에 따라 귀하의 인적사항, 발병일 및 발병장소,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진료기록,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집된 정보는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환자의 발생 규모와 감염원을 파악하는데 활용됩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출입국 기록, 카드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정보 등을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수집된 정보를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는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없이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 년 월 일 설명자 소속: 성명: 연락처:	서식 5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에 따라 귀하의 인적사항, 발병일 및 발병장소,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진료기록,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관련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국 기록, 카드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정보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하며, 업무종료 시 지체없이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다음은 고지의 의무가 있어서 안내드린 사항으로 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설명자 소속: 성명: 연락처:	
77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서식 6〉 ----------	〈역학조사팀〉 (시스템 적용 예정 사항) 1.7, 1.8 감염취약시설 유형 관련 수정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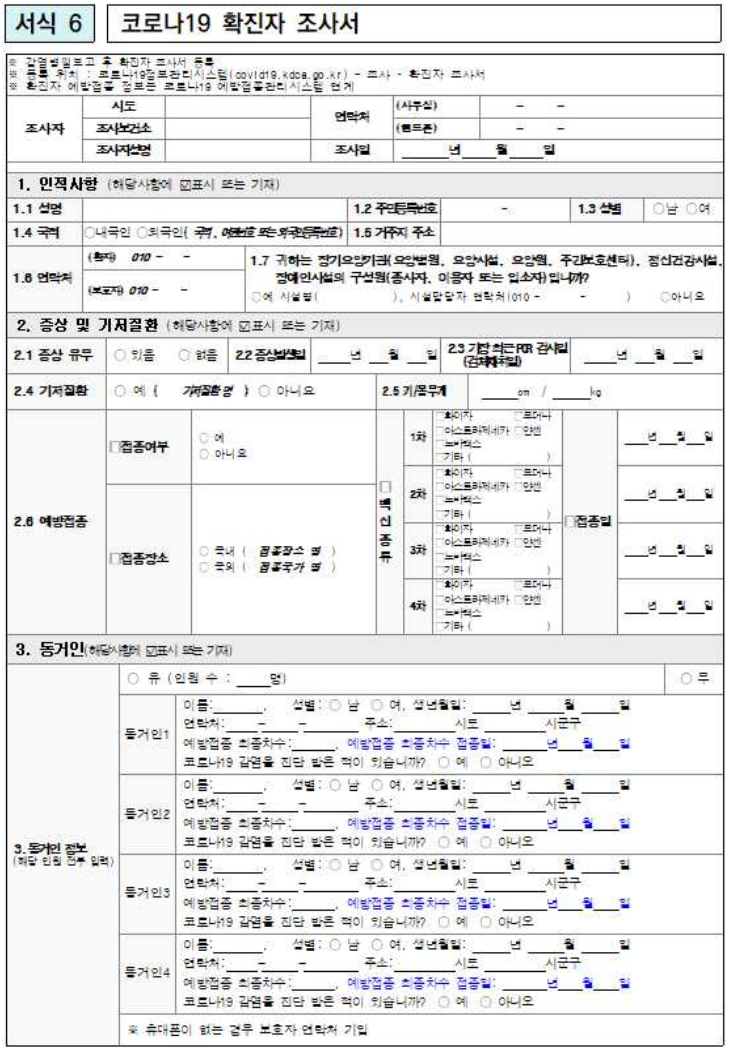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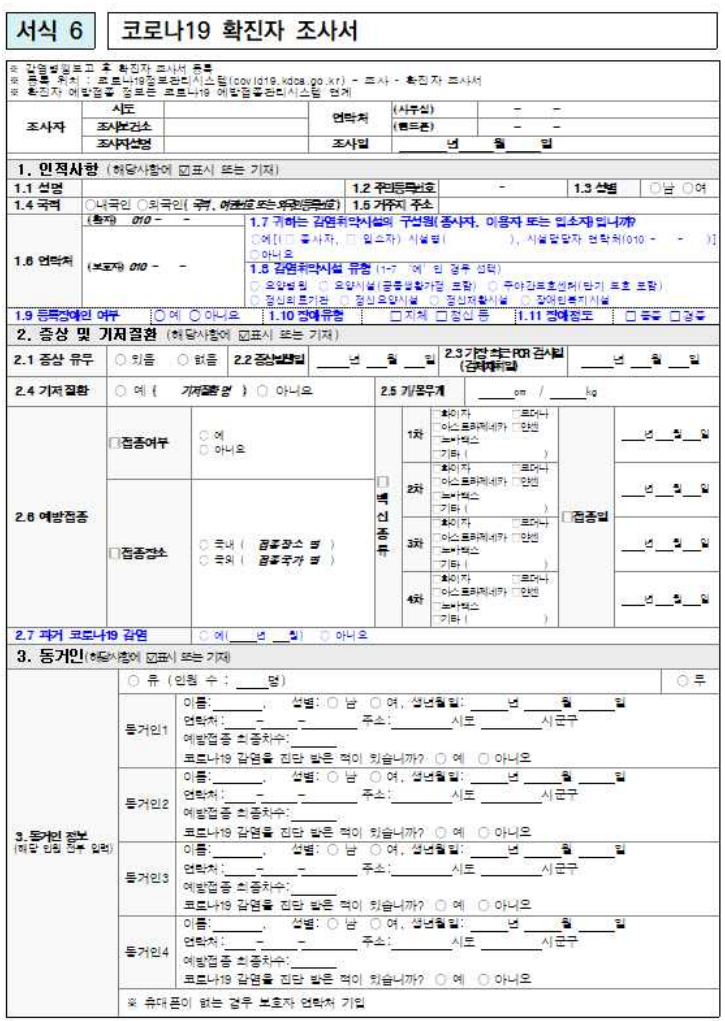	1.9~1.11 장애 관련 변수 복구 2. 증상 및 기저질환 〉 2.7 과거 코로나19 감염력 변수 추가 3. 동거인 〉 3. 동거인 정보 중 예방접종 최종차수 접종일 삭제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 감염병발표고 후 확진자 조사서 등록
※ 등록 위치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조사 - 확진자 조사서
※ 확진자 예방접종 정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연계

조사자	시도		연락처	(사무실)	- -
	조사보건소			(핸드폰)	- -
	조사자성명		조사일	____년____월____일	

1. 인적사항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1.1 성명		1.2 주민등록번호	-	1.3 성별	○남 ○여
1.4 국적	○내국인 ○외국인(국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1.5 거주지 주소			
1.6 연락처	(휴대) 010 - -	1.7 귀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시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의 구성원(종사자, 이용자 또는 입소자)입니까?			
	(보호자) 010 - -	○예 시설명( ), 시설담당자 연락처(010 - -)			○아니오

2. 증상 및 기저질환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2.1 증상 유무	○ 있음 ○ 없음	2.2 증상발생일	____년 ____월 ____일	2.3 가장 최근 PCR 검사일 (검체채취일)	____년 ____월 ____일
2.4 기저질환	○ 예 (기저질환 명) ○ 아니오	2.5 기본무게	____cm / ____kg		

2.6 예방접종	☐접종여부	○ 예 ○ 아니오	☐백신종류	1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기타 ( )	☐접종일	____년____월____일
				2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기타 ( )		____년____월____일
	☐접종장소	○ 국내 (접종장소 명) ○ 국외 (접종국가 명)		3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기타 ( )		____년____월____일
				4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기타 ( )		____년____월____일

3. 동거인(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3. 동거인 정보 (해당 인원 전수 입력)	○ 유 (인원 수 : ____명)	○ 무
	동거인1	이름:_____,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____년 ____월 ____일 연락처: ___-___-_____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예방접종 최종차수:_____, 예방접종 최종차수 접종일: ____년____월____일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동거인2	이름:_____,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____년 ____월 ____일 연락처: ___-___-_____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예방접종 최종차수:_____, 예방접종 최종차수 접종일: ____년____월____일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동거인3	이름:_____,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____년 ____월 ____일 연락처: ___-___-_____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예방접종 최종차수:_____, 예방접종 최종차수 접종일: ____년____월____일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동거인4	이름:_____,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____년 ____월 ____일 연락처: ___-___-_____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예방접종 최종차수:_____, 예방접종 최종차수 접종일: ____년____월____일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휴대폰이 없는 경우 보호자 연락처 기입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 감염병발표고 후 확진자 조사서 등록
※ 등록 위치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조사 - 확진자 조사서
※ 확진자 예방접종 정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연계

조사자	시도		연락처	(사무실)	- -
	조사보건소			(핸드폰)	- -
	조사자성명		조사일	____년____월____일	

1. 인적사항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1.1 성명		1.2 주민등록번호	-	1.3 성별	○남 ○여
1.4 국적	○내국인 ○외국인(국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1.5 거주지 주소			
1.6 연락처	(휴대) 010 - -	1.7 귀하는 감염취약시설의 구성원(종사자, 이용자 또는 입소자)입니까?			
	(보호자) 010 - -	1.8 감염취약시설 유형 (1-7 예 일 경우 선택)			
		○예[☐ 종사자, ☐ 입소자) 시설명( ), 시설담당자 연락처(010 - -)] ○아니오			
		○ 요양병원 ○ 요양시설(공중보건의가 포함) ○ 주야간보호센터(단기 보호 포함) ○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1.9 등록장애인 여부	○ 예 ○ 아니오	1.10 장애유형	☐지체 ☐정신 등	1.11 장애정도	☐중증 ☐경증

2. 증상 및 기저질환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2.1 증상 유무	○ 있음 ○ 없음	2.2 증상발생일	____년 ____월 ____일	2.3 가장 최근 PCR 검사일 (검체채취일)	____년 ____월 ____일
2.4 기저질환	○ 예 (기저질환 명) ○ 아니오	2.5 기본무게	____cm / ____kg		

2.6 예방접종	☐접종여부	○ 예 ○ 아니오	☐백신종류	1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기타 ( )	☐접종일	____년____월____일
				2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기타 ( )		____년____월____일
	☐접종장소	○ 국내 (접종장소 명) ○ 국외 (접종국가 명)		3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기타 ( )		____년____월____일
				4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기타 ( )		____년____월____일
2.7 과거 코로나19 감염	○ 예(____년 ____월) ○ 아니오						

3. 동거인(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3. 동거인 정보 (해당 인원 전수 입력)	○ 유 (인원 수 : ____명)	○ 무
	동거인1	이름:_____,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____년 ____월 ____일 연락처: ___-___-_____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예방접종 최종차수:_____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동거인2	이름:_____,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____년 ____월 ____일 연락처: ___-___-_____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예방접종 최종차수:_____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동거인3	이름:_____,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____년 ____월 ____일 연락처: ___-___-_____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예방접종 최종차수:_____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동거인4	이름:_____,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____년 ____월 ____일 연락처: ___-___-_____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예방접종 최종차수:_____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휴대폰이 없는 경우 보호자 연락처 기입	

부록

<table>
<tr><th>쪽</th><th>현행(13판)</th><th>13-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115</td><td>□ 유증상자 10대 수칙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지역내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지정의료기관을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td><td>□ 유증상자 10대 수칙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지역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td><td>〈중수본 의료대응전략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병의원의 명칭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22.7.1.~)</td></tr>
<tr><td>166</td><td>○ (권리)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사용현황과 입원환자 상태를 일일 보고하며, 「중수본 재원관리팀」에서 주3회 모니터링하여 재원부적절"할 경우 퇴실 명령.</td><td>○ (권리)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사용현황과 입원환자 상태를 일일 보고하며, 「중수본 재원관리팀」에서 주4회 모니터링하여 재원부적절"할 경우 퇴실 명령.</td><td>〈중수본 재원관리팀〉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주기 확대('22.7.23.)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개선('22.5.8.)</td></tr>
<tr><td>166</td><td>○ (전원 권고·명령 및 행정조치)
❷-2. (중수본) 퇴실명령 2일차 재원적정성 평가결과 중증병상 재원 미부합 시 평가 익일부터 손실보상 삭감(퇴실 이후부터 원래대로 보상)
<table><tr><td>재원기간</td><td>1~5일</td><td>6~10일</td><td>11~20일</td></tr><tr><td>손실보상 삭감</td><td>14배 → 1배</td><td>10배 → 1배</td><td>6배 → 1배</td></tr></table></td><td>○ (전원 권고·명령 및 행정조치)
❷-2. (중수본) 퇴실명령 2일차 재원적정성 평가결과 .....
<table><tr><td>재원기간</td><td>1~5일</td><td>6~10일</td><td>11~20일</td></tr><tr><td>손실보상 삭감</td><td>10배 → 1배</td><td>8배 → 1배</td><td>6배 → 1배</td></tr></table></td><td>〈중수본 수도권긴급대응반〉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개선('22.5.8.)</td></tr>
<tr><td>172</td><td>부록 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td><td>부록 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삭제〉</td><td>〈해외출입국관리팀〉
해외입국 관리 체계 개편(6.8.)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면제</td></tr>
<tr><td>173</td><td></td><td></td><td>〈해외출입국관리팀〉
해외입국 관리 체계 개편(6.8.)에 따라 전면 수정</td></tr>
</table>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177	부록 2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 [해외입국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해외입국자용)]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울러 입국 후 1일차 및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기타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수동감시 중 검사] ❶ **입국일로부터 ~~1일차 및~~ 6~7일차에 ~~PCR검사~~ 신속항원검사(RAT)를** 권고하고 있으며, 자가키트 검사 결과 음성양성인 경우는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 사용한 키트를 밀봉하여 보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❷ 수동감시 중 소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를 받습니다.~~ ~~▶ ❶, ❷ 들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귀하의 검사일은 _____년 ____월 ____일~ ____월 ____일,~~ ~~수동감시 기간은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입니다.~~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부록 27 해외입국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 [해외입국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가 모니터링] ○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기타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수동감시 중 검사] ❶ **입국일로부터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권고하고 있으며, 자가키트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사용한 키트를 밀봉하여 보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관리팀〉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절차

<table>
<tr><th>쪽</th><th>현행(13판)</th><th>13-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td><td>
<table>
<tr><td>부록 31</td><td>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td></tr>
</table>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21.7.28 기준)
<table>
<tr><th></th><th></th><th>세부사항</th><th>주관</th></tr>
<tr><td>1.</td><td>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공지</td><td>• 상호주의 원칙 및 귀책사유 해당 해외유입 외국인 자부담 사전 안내
매월 말 홈페이지 공지 / 익월 1일부터 적용</td><td>• 지자체
• 외교부
• 질병관리청</td></tr>
<tr><td>2.</td><td>신고 및 보고</td><td>상호주의 원칙
• (신고) 입국 후 14일 이내 양성 또는 유증상으로 격리입원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비고란에 반드시 입국 날짜 및 자부담 대상 여부 기입
• (보고) 자부담 대상인 경우 외국인 거주지 및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보고
귀책사유
방역수칙 위반시
•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지자체 전담 관리
• (보고) 귀책사유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보고
PCR 음성확인서 허위제출시
•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방역당국 관리
• (통보) 방역당국은 관할 보건소에 자부담환자임을 통보</td><td>•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검역소
• 임시생활시설
• 질병관리청</td></tr>
<tr><td>3.</td><td>확인 및 입원치료 통지</td><td>•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치료비 자부담 환자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
•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해당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통보</td><td>• 의료기관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td></tr>
<tr><td>4.</td><td>격리 해제 등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td><td>•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td><td>• 의료기관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td></tr>
</table>
▶ 해외입국한 외국인의 상호주의 해당 여부는 매달 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 확인 (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공지사항) 또는 1339 콜센터 문의
▶ 1339 콜센터로 문의 시, ARS 음성안내에서 5번(기타)를 선택하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 문의" (오전 9시 ~ 18시까지 상담 가능)
</td><td>
<table>
<tr><td>부록 31</td><td>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td></tr>
</table>
<table>
<tr><th></th><th></th><th>세부사항</th><th>주관</th></tr>
<tr><td>1.</td><td>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공지</td><td>• 상호주의 원칙 및 귀책사유 해당 해외유입 외국인 자부담 사전 안내
매월 말 홈페이지 공지 / 익월 1일부터 적용</td><td>• 지자체
• 외교부
• 질병관리청</td></tr>
<tr><td>2.</td><td>신고 및 보고</td><td>상호주의 원칙
• (신고) 입국후 격리기간 중 확진으로 격리입원시 질병보건통합보건시스템신고
비고란에 반드시 입국 날짜 및 자부담 대상 여부 기입
• (보고) 자부담 대상인 경우 외국인 거주지 및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보고
귀책사유
방역수칙 위반시
•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지자체 전담 관리
• (보고) 귀책사유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보고
PCR 음성확인서 허위제출시
•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방역당국 관리
• (통보) 방역당국은 관할 보건소에 자부담환자임을 통보</td><td>•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검역소
• 임시생활시설
• 질병관리청</td></tr>
<tr><td>3.</td><td>확인 및 입원치료 통지</td><td>•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치료비 자부담 환자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
• (보건소) 입원격리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해당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통보</td><td>• 의료기관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td></tr>
<tr><td>4.</td><td>격리해제등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td><td>•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td><td>• 의료기관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td></tr>
</table>
▶ 해외입국한 외국인의 상호주의 해당 여부는 매달 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 확인 (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공지사항) 또는 1339 콜센터 문의
▶ 1339 콜센터로 문의 시, ARS 음성안내에서 5번(기타)를 선택하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 문의" (오전 9시 ~ 18시까지 상담 가능)
</td><td>현행화 (치료비 지침 9판 내용 발췌)</td></tr>
<tr><td>219</td><td></td><td></td><td>〈진단총괄팀〉
- 선제검사 조정(중앙방역대책본부-17509, '22.5.18., 중앙방역대책본부</td></tr>
</table>

<table>
<tr><th>쪽</th><th>현행(13판)</th><th>13-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td><td>
부록 38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table>
<tr><th colspan="2">우선순위 검사 대상</th><th>증빙자료 예시</th></tr>
<tr><td>만 60세 이상 고령자</td><td>만 60세 이상 고령자</td><td>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td></tr>
<tr><td>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td><td>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td><td>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td></tr>
<tr><td rowspan="3">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td><td>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td><td>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등</td></tr>
<tr><td>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td><td>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td></tr>
<tr><td>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td><td>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td></tr>
<tr><td rowspan="4">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td><td>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td><td>재직증명서, 사원증 등</td></tr>
<tr><td>외국인보호시설 · 소년보호기관 · 교정시설 입소자</td><td>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td></tr>
<tr><td>휴가 복귀 장병
입영 장정</td><td>휴가증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td></tr>
<tr><td>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td><td>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td></tr>
<tr><td>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td><td>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td><td>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td></tr>
</table>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td><td>
부록 38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table>
<tr><th>우선순위 검사 대상</th><th>증빙자료 예시</th></tr>
<tr><td colspan="2">만 60세 이상 고령자</td></tr>
<tr><td>- 만 60세 이상 고령자</td><td>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td></tr>
<tr><td colspan="2">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td></tr>
<tr><td>-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td><td>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td></tr>
<tr><td colspan="2">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td></tr>
<tr><td>-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td><td>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td></tr>
<tr><td>-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정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td><td>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td></tr>
<tr><td>-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에 한함</td><td>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 발급), 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장기 : A1~3, D1~10, E1~10, F1~4, F6, H1~2, G-1
▸단기 : B1~2, C1, C3~4</td></tr>
<tr><td colspan="2">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td></tr>
<tr><td>-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td><td>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td></tr>
<tr><td>- 입영 장정</td><td>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td></tr>
<tr><td>-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td><td>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td></tr>
<tr><td colspan="2">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td></tr>
<tr><td>-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td><td>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td></tr>
</table>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교육부),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복지부)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td><td>-24187, ’22.8.8.), 코로나19 검역 대응지침 개정(중앙방역대책본부-18920, ’22.6.3.),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2722, ’22.5.19.) 반영
- 격리 대상 접촉자, 입원 전 검사 대상 명확화 등</td></tr>
<tr><td>229
~
245</td><td>(신설)</td><td>〈부록 40〉 코로나19 관련 신종변이바이러스 감시·조사·평가 매뉴얼</td><td>〈역학조사팀〉
신종변이바이러스 관련 대응을 위하여 매뉴얼 작성 및 안내</td></tr>
</table>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부록 40 코로나19 관련 신종변이바이러스 감시·조사·평가 매뉴얼 □ 목적 ○ 신종변이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위험도평가를 위해 분야별 조사, 분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변이 대비 · 대응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국내·외 변이 발생 조기 인지를 위한 감시 체계 보완 ○ 역학 및 바이러스 분야별 '조사·분석·평가' 체계 구축 ○ 중앙-지자체-감시대상 기관 간 협력체계 상시 유지 및 신속대응 기반 마련 □ 분야별 주요 내용 ○ **(감시)** - (목적) 감시네트워크를 이용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신속 인지 - (대상) 호흡기환자, 중증환자, 고령층·취약집단 및 해외입국자 - (주요내용) 호흡기환자 검체확보, 진단검사, 통계자료 산출 및 정보공유 ○ **(역학조사 · 대응)** - (목적) 추가전파 최소화 및 신속 위험도 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 (대응체계) 지자체-권역 질병대응센터-질병관리청 간 유기적인 협조·지원 체계 구축·운영 - (대상) 신규변이 확진자 초기 50 사례 또는 변이 관련 초기 집단사례 - (주요내용) 전파력, 임상증상, 중증도, 백신 및 치료제 효과 ○ **(바이러스분석 · 대응)** - (목적) 신속한 신종변이 확인 및 과학적 정보기반 심층분석을 통한 방역 대응 근거 산출 - (대상) 감시운영에서 확보된 코로나19 양성 검체 - (주요내용) 유전자, 면역, 배양 및 구조분석을 통한 변이 특성분석 ○ **(위험도 평가)** - (평가기구) 역학조사분석단, 진단분석단, 환자관리팀 - (평가분야) 확산가능성, 영향력, 종합위험도 - (평가주기) 신종변이 발생 및 확산 등 필요 시 (이하 생략)	
묻고 답하기(Q&A)			
238			〈진단총괄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용어 통일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Q6. PCR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사례정의 및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에서는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사비용 무료 ①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신속항원 응급용선별검사 양성자 ○ 의료기관의 확진검사(응급상황),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은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검사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의 검사 비용 및 본인부담률 등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변동 가능	Q6. PCR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사례정의 및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에서는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사비용 무료 ①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신속항원 응급용선별검사 양성자 ○ 의료기관의 확진검사(응급상황),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등은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검사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의 검사 비용 및 본인부담률 등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변동 가능	
240	Q13. 신속항원검사는 누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시중에 판매 중인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증상 등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17. 신속항원검사는 누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시중에 판매 중인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증상 등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진단총괄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용어 통일
245	5. 접촉자 및 확진환자 Q4~Q7 이동, Q8 삭제 Q9	5. 접촉자 및 확진환자 (<6. 입원, 격리 및 격리해제>로 이동하여 삭제) Q4	〈격리관리팀〉 수정
253	Q1. PCR 검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상의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록 38 참고)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⑤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Q1. PCR 검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상의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록 38 참고)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⑤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복지부, 보험급여과〉 급여대상 명확화

<table>
<tr><th>쪽</th><th>현행(13판)</th><th>13-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td><td>○ 이 외 응급(분만)환자, 입원(소)환자, 독감의심환자 등에게는 관련 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급여범위에 따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d>○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응급(분만)환자, 입원(소)환자 등 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급여범위에 따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① 만 60세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d></td></tr>
<tr><td>253</td><td>Q2. PCR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상기도검체(지침의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비인두도말 기본)를 채취하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 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검체 종류별 채취 방법〉
<table><tr><td>상기도 검체</td><td>-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혀를 누르고, 면봉으로 편도 주변 인두 후벽에서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긁어서 채취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채취)</td></tr><tr><td>하기도 검체</td><td>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td></tr></table></td><td>Q2.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상기도검체(비인두도말물 기본)를 채취하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 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삭제〉</td><td>〈진단총괄팀〉
설명 단순화 및 명확화</td></tr>
</table>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256	(신설)	Q12. 수술을 위해 입원할 예정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입원 전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간호할 보호자도 함께 검사받을 수 있나요? ○ 입원 예정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환자와 보호자(1인)가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면 환자와 보호자 모두 무료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검사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간호 예정인 보호자 단독으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Q13. 가족이 입원 중으로, 보호자 교대가 필요해서 새로운 보호자에 대해 PCR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나요? ○ 환자 입원 이후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우선순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입원 중 환자의 상주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주 1회)하고 있으므로, 검사 비용 일부(약 4천원 내외)만 부담하시고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취합 1단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간병인·보호자의 교체 시에도 검사 시행 및 급여 적용이 가능하나,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위해 교대를 최소화합니다.	〈진단총괄팀〉 추가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Q14. 한국에 잠시 방문하는 외국인입니다.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후 PCR 검사는 우선순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해외입국자 무료 검사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나 코로나19 PCR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하셔야 합니다. Q15. 검사 결과가 미결정이라는데, 검사가 잘못된 것인가요? ○ 아닙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체내 바이러스량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감염 초기나 회복기와 같이 체내 바이러스량이 낮은 상태에서는 양성과 음성의 경계에 해당하는 PCR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미결정으로 판정하며, 이는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검사 결과만으로 음성 또는 양성을 명확히 판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Q16. 검사 결과가 미결정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PCR 검사 결과가 미결정인 경우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24시간 이상) 새롭게 검체를 채취하여 다시 검사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256			〈복지부, 보험급여과〉 급여대상 명확화

<table>
<tr><th>쪽</th><th>현행(13판)</th><th>13-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td><td>Q14.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td><td>Q18.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적용(건강보험 지원) 대상
①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환자
② 중환자실 입원환자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의 혈액투석 환자
④ (한시적 적용)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
- 의사의 진단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
- 의사의 판단에 따른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td><td></td></tr>
<tr><td>256</td><td>Q15. 제가 스스로 검사하는 것은 정확도가 낮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의료인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 의료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td><td>Q19. 제가 스스로 검사하는 것은 정확도가 낮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의료인에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 의료인에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가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td><td>〈복지부, 보험급여과〉
급여대상 명확화</td></tr>
<tr><td>257</td><td>Q1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무엇이 다른가요?

○ 전문가용과 개인용(자가검사) 신속항원검사의 원리는 동일하나, 사용하는 검체와 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 검체의 종류, 검체 채취자, 검사 시행자가 달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전문가용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table><tr><th>구분</th><th>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th><th>개인용 신속항원검사</th></tr><tr><td>검체</td><td>비인두도말물 (의료인이 채취)</td><td>비강 도말물 (스스로 채취)</td></tr><tr><td>검사시행 주체</td><td>의료인 등 검사 전문가</td><td>개인</td></tr></table></td><td>(삭제)</td><td>〈진단총괄팀〉
우선순위 검사대상 관련 주요 질의 반영</td></tr>
<tr><td>258</td><td>4. 치료 및 예방
Q3.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td><td>4. 치료 및 예방
Q3.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td><td>〈지침관리팀〉
출처 지침 명시</td></tr>
</table>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 단, 담당의·지자체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 단, 담당의·지자체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판)」 참조	
258	〈신설〉	Q4.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 국내감염의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미가입자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22.7.11.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포함)는 지원 중단 ▶ 다만,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는 격리해제일까지 지원 계속	〈지침관리팀〉 묻고답하기 "6.입원, 격리 및 격리해제(Q24)"에서 "4. 치료 및 예방"으로 이동 치료비 지침(9판) 개정에 따른 내용 현행화
259	〈신설〉	Q5.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의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지침관리팀〉 묻고답하기 "6.입원, 격리 및 격리해제(Q25)"에서 "4. 치료 및 예방"으로 이동 치료비 지침(9판) 개정에 따른 내용 현행화
260	5. 접촉자 및 확진환자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생략)	5. ---------- Q1. ----------	〈역학조사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장애인정책과 의견 확인 후 감염취약시설 상세화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시설 / ③ 장애인시설 ▶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가능	▶ ---------- ① ---------- ② 정신건강증진시설(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③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쉼터(아동 포함)) ▶ ----------	
261	Q5.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집이나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중도 출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입국 후 1일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면 출국 가능합니다. ○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도 건강상의 이유나 인도주의적 사유(임종 · 장례식) 등 인도적 사유 발생으로 국적국가 또는 출발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시설 단장의 승인 하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해외입국 후 자가 및 시설 격리 중 확진되어 별도의 격리명령이 통지된 경우에는 중도 출국할 수 없습니다.	Q5.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격리관리팀) 법적 근거 추가, 해외입국자 격리 중단 조치 반영, 표현 명확화 (해외출입국관리팀)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 해제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단('22.6.8.)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Q6. 격리면제서를 입국 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사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Q6. (삭제)	
	○ 격리면제 제도는 특정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이 10일간 격리로 입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입국 전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격리면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가격리 중 장례식 참석 허용 여부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서 해당자의 증상 발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결정합니다.	○ (삭제) - (삭제) - (삭제)	
	Q7.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면제대상자인 경우 중도 출국이 가능한가요?	Q7. (삭제)	
	○ 입국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격리면제 기간 중이라도 출국은 가능합니다.	○ (삭제)	
269	6. 입원, 격리 및 격리해제 Q24.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국내 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삭제〉	〈지침관리팀〉 묻고답하기 "6.입원, 격리 및 격리해제(Q24)"에서 "4. 치료 및 예방"으로 이동
270	6. 입원, 격리 및 격리해제 Q25.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감염의 경우	〈삭제〉	〈지침관리팀〉 묻고답하기 "6.입원, 격리 및 격리해제(Q25)"에서 "4. 치료 및 예방"으로 이동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참조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에 대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확인(kdca.go.kr → 알림 · 자료 → 법령 · 지침 · 서식 → 지침 → 공지사항) 또는 1339 문의		
272	Q1. 해외입국자 중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국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 **2차 접종완료자** : WHO 승인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 ▶ **3차 접종완료자** ; WHO 승인 백신 3차 접종 즉시 ○ 격리면제서 소지자(대사관 또는 관계부처에서 발급) ○ 또한, 만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	Q1.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격리관리팀) 법적 근거 추가, 해외입국자 격리 중단 조치 반영, 표현 명확화 (해외출입국관리팀)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 해제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단 ('22.6.8.)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단하여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 Q3.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가 면제되어 수동감시 중인 자는 수동감시 기간에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기간 중 출국 가능 ○ 다만, 마스크 착용 및 본인 건강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Q3. (삭제) ○ (삭제) ○ (삭제)	
272	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Q2, Q4, Q5 수정	**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Q1. 국내·외 예방접종이력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 받은 QR를 검역관에게 제시하여 증빙 가능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사전입력시스템에서 정보입력 후 '예방 접종 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접종이력 자동 등록(증명서 첨부 불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사전입력시스템에서 '해외접종자(직접등록)'를 선택하고 접종이력 입력 및 증명서 업로드 Q2. 해외입국자에 대한 최신화된 방역절차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Q3.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 방법은? ○ 질병청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공지사항, 큐코드 사이트(https://cov19ent.kdc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해외출입국관리팀〉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격리면제 실시 중으로 해당 내용 반영
284	13. 기타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	13. 기타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	〈중수본 의료대응전략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병의원의 명

쪽	현행(13판)	13-1판 개정(안)	개정사유
	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지정의료기관을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칭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22.7.1.~)